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5334

제출연월일: 2024. 11. 7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쇄사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인쇄사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신고) ① (생 략)	제12조(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	<u><삭 제></u>
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	
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	
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	
③ 시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	<u><삭 제></u>
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	
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	
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	
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	
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	
리한 것으로 본다.	
④・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